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10. 13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시청장



- 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
- 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, 제12조 및 제29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 불능 사유	주소
				처분 제목	처분 사유	처분 내용		
1	남O선	91.04.11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통보일자에 방문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○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○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충북 청주시 청원구(이하 생략)
2	김O민	81.04.29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통보일자에 방문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○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○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충북 청주시 흥덕구 (이하생략)
3	황O호	00.01.23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통보일자에 방문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○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○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이사불명	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(이하생략)

4	이○훈	96.03.07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분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통보일자에 방문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○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○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 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충북 청주시 상당구 (이하생략)
5	설○애	96.10.19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연속하여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아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해당	○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○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 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충청북도 청 주시 흥덕구 (이하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10.13. ~ 2026.10.27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시청 청주고용복지센터 김유정(Tel. 043-230-671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